

보도자료

2011년 12월 16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과장(2530) 나. 통신정책기획과 이상학과장(2510)
다. 시청자권익증진과 박준선과장(2690) 라. 조사기획총괄과 최영진과장(2610)
마. 방송진흥기획과 이태희과장(2310)
바.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과장(2430)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과장(2250)

[보고안건]

가. 조사기획총괄과 최영진과장(2610) 나.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2350)
다.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2350)

2011년 제73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장애인방송 제공대상사업자, 사업자별 편성목표, 장애인방송 성실 제공 및 유형표시 의무,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점검, 기타 장애인 방송 시청편의 제고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 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된('11.7.14 공포, '12.1.15 시행) 방송법을 반영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경쟁상황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마.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 형제들' 재심에 관한 건(첨부3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11.10.21)에 대하여 당사자인 한국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한 바,
- 제재조치 결정 이후,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제재조치를 경고로 1단계 완화하기로 의결함

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등 6개사(첨부4 참조)

- 2011.12.31.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6개사 모두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여 재허가하기로 하되, 관련 사업자별로 수신환경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5 참조)

- 방송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6 참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하고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 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7 참조)

- 방송법 시행령 개정('11.8.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첨부 1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주요 내용

○ 장애인방송 제공대상사업자 (안 제5조)

-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사업자와 방통위가 사업자의 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고시사업자로 구분
 - 지정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고시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사업자별 편성목표 (안 제6조, 제7조)

- 2012년을 기점으로 하여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중양지상파는 2013년),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달성토록 함
- 편성비율은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목표로 하고, 위성방송과 SO는 지상파의 70%, 일반PP는 50% 수준을 목표로 설정

○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및 유형표시 의무 (안 제8조, 제9조)

- 장애인방송 송신/재송신시 장애인방송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도록 함

○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점검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저작권이 문제가 되거나 제작이 곤란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장애인방송 편성 예외 프로그램으로 인정

○ 기타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안 제15조)

- 주문형 비디오(VOD) 등 비실시간 방송,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등에 대하여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첨부 2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금지행위 유형 등)

유형 (법)	세부유형 (시행령)
I. 채널 · 프로그램 제공, 필수설비 접근 거부, 채널편성 변경 등	1.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2. 채널을 제공하면서 채널 제공과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4.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5.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로서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이하 “필수설비”라 한다)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계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수설비를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7.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필수설비와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8. 채널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
II. 적 정 한 수익배분 거부 등	9. 적절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10.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1.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절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III. 방송시청의 방해 등	12.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3. 단체계약 체결을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한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
	14. 과다한 이익제공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5. 거짓 고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6.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IV. 부 당 한 시청자 차별	17. 장기, 다량, 가입전환 또는 가입미전환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
	18.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
	19. 결합판매시 현저하게 유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부당하게 시청자 차별
V. 이용약관 위반 등	20.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 제공
	21.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 청구
	22.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제공
VI.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23.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24.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기 타	0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I.~VI.까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 금지행위의 기준을 고시 할 수 있음

< 위원회 보고 후 주요 변경 사항 >

위원회 보고안	의결안	비고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I. 1. 나. 채널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거나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거나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차별적인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제시하여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I. 1. 나. 채널을 제공하면서 <u>채널제공과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u>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나. <u>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u>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다.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u>필수설비와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u>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o 공정위 협의 o 지상파 의견 반영 ("현저히"추가) o 지상파 의견 반영 (프로그램→방송프로그램) o 공정위 협의 o 지상파 의견 반영 ("현저히"추가)
II. 1. 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u>현저히 불리한 수익배분 조건의 수용을 강요하는 행위</u> 2. 가.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나. 다른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여 <u>사실상의 수익배분이 현저히 줄어들게 하는 행위</u>	II. 2. 이면계약 등을 통해 <u>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u> 3. <u>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u> < 삭 제 >	o 공정위 협의
III. 나. 개별 시청자의 가입 동의 없이 <u>공동주택의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u>	III. 나. 공동주택의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한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	o SO협의회 의견 반영
VII.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I.부터 VI.까지 각 목 이외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할 수 있다.	VII.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I.부터 VI.까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 금지행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o 공정위 협의

< 첨부 3 >

한국방송공사 '오작교 형제들' 재심 검토내용

□ 경과사항

- '11. 10.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 형제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 요청
- '11. 10. 2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에 제재조치 처분

원심 주요내용

- 프로그램 : KBS-2TV의 '오작교 형제들' (2011.8.6(토), 8.7(일), 8.13(토), 8.14(일), 8.20(토), 8.21(일), 8.27(토), 8.28(일), 19:55-21:05 방송)
- 제재조치 :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언어, 수용수준, 광고효과제한 조항 위반)
- 위반내용 :
 - 주말연속극 '오작교 형제들'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 ① 등장인물이 "이 년이 쥐악을 잘못 쳐집어 먹고서 물을 못 쳐마셨나...입 못 쳐닫아?...씩을 년!.., 이 똥물에 튀길, "이 년이 왜...지랄이여?", "미친 새끼!", "내가 미친 년이지" 등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여과없이 방송하였고
 - ② 특정 협찬주의 제품(휴대폰)을 근접 촬영하여 영상통화장면 등을 약 1분20초 간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였음

- '11. 10. 21. 한국방송공사, 제재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
- '11. 10. 26.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 '11. 11. 18. 한국방송공사, 제재조치 처분 재심청구
- '11. 1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적정한 결정(경고로 완화)이 타당할 것' 의견 통보

□ 한국방송공사의 재심 청구취지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언어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방송 초반에 극중 캐릭터와 내용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광고효과 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 당시 해당 제품(소니 에릭슨사의 '엑스페리아 레이'휴대폰)은 출시 전이었고 영상통화 기능도 없으며, 브랜드에도 가림처리를 하는 등 광고효과의 의도성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동 제재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선처를 바라며 재심을 청구함('11.11.18.)

□ 재심청구 관련 검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심 의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이후 지적사항이 크게 반영·개선되어 방송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재심 신청요지(특히 광고효과 부분)가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통보('11.12.2.)

○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 형제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완화를 요청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원심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오작교 형제들>을 방송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없이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제재조치 결정 이후 지적사항이 크게 반영·개선되어 방송되고 있으며,
-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 전개상 핸드폰 화면 방영이 불가피하고, 해당 제품(휴대폰)에 대해 브랜드 가림처리 등 간접광고 효과 배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의견진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첨부 4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세부사항

□ 대상 사업자

사 업 자 명	대 표 자	허가 만료일자	방송구역
한국방송공사	김인규	2011. 12. 3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문화방송	김재철		
(주)에스비에스	우원길		
(주)와이티엔디엠비	배석규		
한국디엠비(주)	김경선		
유원미디어(주)	주상균		

□ 재허가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방송법]

가. 심사결과

-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재허가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요건을 충족함

※ 제33차 방통위('11.5.27) 의결사항 :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가 가능

<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항목별 세부 평가점수는 불임3 참조) >

구 분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총 점	698.01	711.31	710.11	723.97	709.36	681.99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①스마트 단말기를 통한 이동방송 유사서비스의 확산, ②2012년 주파수 재배치 계획, ③차세대DMB(AT-DMB)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변화, ④방송통신 통합 법제 도입 등이 예상되므로
- 방송환경 변화를 DMB 정책에 반영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 신규 DMB사업자(YTNDMB, 한국DMB, U1미디어)에 대하여는 사업 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다르게 규제(소유제한, 편성·광고 기준, 채널 구성 등에서 규제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계열 공영방송이 아닌 지상파DMB사업자는 부가서비스(T-커머스 등), 모바일 홈쇼핑 등 신규 수익사업 추진을 통해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DMB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DMB방송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본방송 수중계 방식 이외에 DMB방송의 장점을 살린 별도의 DMB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규 DMB 3사(YTNDMB, 한국DMB, U1미디어)의 경우, 누적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재무구조 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결손 현황('10년말 기준) : YTNDMB △257억원, 한국DMB △254억원, U1미디어 △260억원

다. 이행각서 징구

-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별로 아래와 같이 방송국 허가증 교부 전에 이행각서를 징구함

사업자	내용
6개사 공통 (기술심사결과 반영)	◦경기 동부 지역의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보조국 시설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허가증 교부 이전에 이행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주) 에스비에스(주)	◦지상파방송 수중계를 통하는 방법 이외에 별도로 DMB를 통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허가증 교부 이전에 이행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허가증 교부 이전에 이행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방송국 재허가 기술심사 결과 [전파법]

○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법·기술적 조건은 모두 충족(붙임5 참조)하고 있어,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증에 부관사항으로 명기하여 재허가

- **(부관사항 추가내용)**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송보조국 구축·운용시 관련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관사항에 추가함

- 주파수 이용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을 따를 것
- 방송운용계획 및 방송시설 설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 방송구역내의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보조국을 설치·운용할 것
- 방송보조국을 구축·운용시 관련시설 공동사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기술기준과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따를 것
-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다만, 경기 동부지역의 수신환경이 방송보조국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여 수도권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임

< 수도권 DMB 수신 커버리지 현황('11.9월 기준, 전파연구소, 단위: %) >

구 분	통합	한국방송 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와이티엔디 엠비	한국 디엠비	유원 미디어
수도권	86.0	89.3	84.6	84.5	86.2	85.8	85.5
경기 동부	73.4	80.5	70.6	70.3	73.7	72.9	72.1

* 경기 동부 :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

* 커버리지 : 방송구역에 대한 행정면적 대비 방송면적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 따라서, 경기 동부지역의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보조국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허가시 권고 필요

□ 허가 유효기간(안) 관련

-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의거, 5년이며,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 범위내에서 단축하여 부여할 수 있음(제4항)

※ 방통위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2년내)하여 부여 가능

- 전파법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 규정의 취지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허가 유효기간을 의결

- (제1안)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주파수 재배치 계획 등의 방송환경 변화를 DMB 정책에 반영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재허가 대상 6개 사업자 모두에게 3년으로 단축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

- (제2안) 방송계의 일반적 환경변화 보다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경영 전략에 대응하도록 하며, 심사 결과, 6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전파법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따라 5년으로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

□ 향후 계획

-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공표
- 사업자별 이행각서 징구 및 허가증 교부

< 첨부 5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① 기준금액의 산정 (안 제4조, 제5조)

- **(관련매출액)**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서비스 수익(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 수익, 프로그램 판매수익, 홈쇼핑송출수수료 및 기타 방송수익 등) 중
 -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방송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정하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상 과징금 부과규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정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초과 1.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6% 초과 1.2%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6% 이하

② 필수적 조정 (안 제6조)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최고 100%)
 - **(위반기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최고 50%까지 가산

구 분	위반기간	가산금액
단기 위반행위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준금액의 10% 가산
중기 위반행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기준금액의 20%~30% 가산
장기 위반행위	2년 초과	기준금액의 50% 가산

- **(위반횟수)**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이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3회 위반시부터 1회당 기준금액의 20% 가산(최고 50%)

③ 추가적 조정 (안 제7조)

-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고의·과실여부, 조사협조 여부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중 사유	가중비율	감경 사유	감경비율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도	30% 이내	조사 적극 협력	20% 이내
조사진행 중 위반행위 미종료	20% 이내	과실에 의한 위반	30% 이내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20% 이내	자진 시정조치 착수 및 완료	20~50% 이내
위반행위로 시장점유율의 증가	30% 이내	재발방지 조치	30% 이내

□ 향후 일정(안)

-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 : '11년 12월
- 위원회 심의·의결 : '12년 1월 초
- 관보게재 및 시행 : '12년 1월 15일

< 첨부 6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안 제3조)

- (개정사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11.8.19) 개정사항을 반영
- (개정내용)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현 행	개정안
방송사업자는 매분기 단위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 지상파 : 80%, SO위성 : 50%, PP : 40%	방송사업자는 매반기 단위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 지상파 : 80%, SO위성 : 50%, PP : 40%

②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안 제5조)

- (개정사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확인에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를 마련
- (개정내용)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만점(22점)의 60% 이상(14점)인 경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
 - (국내자본 비율) 공동제작 다큐멘터리나 외주 드라마의 경우 외국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제작사측 의견과 기 체결된 공동제작 협정을 감안하여 국내자본 투자비율을 30%로 설정

※ 공동제작협정 체결 현황 : 캐나다('95), EFTA('06), 싱가포르('07), 캄보디아('09), EU('10)

- (점수배점) 기획 및 제작형태와 인력의 구성 기준으로 제작의 전 과정을 제작요소에 따라 기획·연출, 연기자·출연자, 제작작업으로 3분하여 총 22점으로 구성

※ 기획·연출과 연기자·출연자의 점수 비중을 높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 과정의 주도적 역할 여부에 비중을 두어 국내제작 여부를 판단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점수(안) 】

기획·연출(9점)			연기자출연자(5점)		제작 작업(8점)				합계 (22점)
기획제작 (3)	시나리오 (3)	연출 (3)	주연 (3)	조연 (2)	영상 (2)	음향 (2)	미술·CG (2)	편집 (2)	

※ 다큐멘터리 등의 경우는 제1성우 또는 나레이터를 주연으로, 제2성우 또는 나레이터를 조연으로 간주

※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영상과 미술·CG를 제외한 18점을 기준으로 11점 이상인 경우 국내제작으로 인정

- (인정신청) 외국자본의 투자가 있거나 외국인이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제작의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 신청

- (자문위원회)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5~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현 행	개정안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 제작으로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 〈 신 설 〉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 제작으로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만점(22점)의 60% 이상(14점)인 방송프로그램

③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 개정(안 제7조)

- (개정사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구조와 제작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개선

※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은 국내 창작제작의 비중이 '06년 매출액 기준 49.6%(1,073억원)에서 '09년 62.9%(2,120억원)로 증가하여 외국 하청제작 구조를 탈피하고 국내 창작제작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

- **(개정내용)** 애니메이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작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에 필요한 항목과 점수를 조정
 - **(인정대상 애니메이션 범위)**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한 작업물로 범위를 명확화
 - ※ 다만, 전체 내용에서 실사영화가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영상물은 인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준)** 저작권과 수익분배권을 보유한 작품으로 신청기준을 강화하여 창작제작 구조로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유도
 - **(인정기준)**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16점(30점 만점) 이상인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제작물도 국내제작 인정 근거 마련
 - ※ 현재 국내 단독제작과 외국 공동제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정기준을 공동제작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일원화(국내 단독제작 : 제작요소별 점수 20점, 외국 공동제작 : 국내자본 투자비율 30% 이상이고 제작요소별 점수 16점)
 - **(배점조정)**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이 외국 하청제작에서 국내 기획제작으로 변화됨에 따라 사전 기획단계의 점수를 상향(10~12점→14점)하고, 제작단계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

구 분	2D		3D		스톱모션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저작권/수익분배권	2	-	2	-	2	-
사전제작	12	14	10	14	10	14
제 작	11	12	13	12	13	12
후반제작	5	4	5	4	6	4

- **(가점항목 명확화)**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점 범위내에서 가점
 - ※ 현재는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경우”로 되어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명확화

④ 외국제작 영화·애니메이션 국적 구별기준 마련(안 제8조의2)

- **(개정사유)**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점검을 위한 외국제작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마련

※ 방송법 제83조에 따른 방송실시결과 제출시 실무적으로 사용하던 외국제작 영화·애니메이션 국적 구별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법령상 근거를 고시에 마련

- **(개정내용)**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캐릭터(1점) 등 총 5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인 국가의 제작물로 결정하되, 2개 국가 이상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2개 이상 국적으로 분류될 경우 제작사를 기준으로 분류

【 외국제작 영화·애니메이션 국적 인정기준 점수(안) 】

시나리오 (1점)	감독 (1점)	제작사 (2점)	주연/캐릭터 (1점)	합계 (5점)
--------------	------------	-------------	----------------	------------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외국 제작 영화·애니메이션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캐릭터(1점)를 기준으로 3점 이상인 국가의 제작물로 분류 ·2개 국가 이상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2개 이상 국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제작사를 기준으로 분류

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안 제9조의2)

- **(개정사유)** 방송법 시행령('11.8.19) 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여부를 판단하는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도입
- **(개정내용)** 작가·출연자·주요 스태프 계약체결, 제작비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
 - **(자문위원회)** 외주제작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5~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외주제작사가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 ① 작가 계약 체결 ② 주요 출연자 계약 체결 ③ 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④ 제작비의 30%이상 조달 ⑤ 제작비 집행 및 관리

⑥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준 마련(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 (개정사유) 방송법 시행령(11.8.19) 개정에 따라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도입
- (개정내용) 외주제작사와 촬영원본을 공유하거나, 주시청시간대 교양 분야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 산정시 가중치 부여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편성시간을 100분의 110으로 인정 ·주시청시간대에 교양분야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10으로 인정

⑦ 3D 전문채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외국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적용 한시 유예(부칙)

- (개정사유) 3D로 제작된 국내 영화가 매우 적고, 외국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등 3D 영화 수급 상의 문제로 편성비율 준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편성비율 적용을 일부 유예

※ 국내제작 3D 영화는 '7광구', '나탈리' 등 2편이며, '나탈리'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7~9시, 13~22시,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7~22시)에는 방송할 수 없음

- (개정내용) 3D 전문채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및 외국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3D 전문채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및 외국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적용을 2012.12.31.까지 유예

□ 향후일정

- 부처협의 및 입안예고 : '11. 12.
- 규제심사 : '11. 12. ~ '12. 1.
- 위원회 의결, 관보게재 및 시행 : '12. 1.

< 첨부 7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사항

1. 지상파방송 3사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허용범위 설정(안 제8조제3항)

- 허용원칙 및 정책목표 : 오락과 교양분야에 대한 제작협찬을 허용하여 경쟁을 통한 제작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되, 협찬 재원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여 외주제작사를 보호
 - (드라마) 외주제작 위주의 드라마시장에 방송사의 자체제작이 가능하도록 제작협찬을 허용함으로써 ▲제작시장의 경쟁 활성화 ▲연기자·작가·연출인력 등의 신규제작 인력 육성 ▲출연료·작가료 등 요소가격 안정화
 - (예능) K-POP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품격 예능 프로그램 제작 유도
 - (교양) 일반 교양프로그램 제작비보다 높게 설정 ▲고품질 교양 프로그램 제작 유도 ▲제작비 현실화 달성

○ 부문별 제작협찬 허용범위

- 오락프로그램
 - 드라마 : 회당 제작비 2억 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 120회 이상
(단, 단막극은 제작비에 관계없이 허용)
※ 회당 제작비 : 내부직원 인건비·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일반관리비 제외(이하 같음)
 - 예능 : 회당 제작비 7천만 원 이상
- 교양프로그램 : 회당 제작비 5천만 원 이상

2. 기타사항

- 방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방송사 및 그 특수관계자의 제작협찬 금지규정 삭제(안 제2조제8호)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 캠페인 협찬 가능 규정 추가(안 제7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정비(안 제4조 및 제13조)
-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 협찬을 받는 사업자를 방송사업자에서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로 규정을 명확하게 재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규제위 심사 등 '11. 12월중 ~ '12. 1월초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관보 게재 및 공포 '12. 1월중